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67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보형, 변호사 윤준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8. 10. 접수 제37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7,898,059원의 한도에서 취소하
고, 피고는 C에게 17,898,059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19. 5. 15.경 폭행을 당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2019. 12. 3.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9가소36461), 위 법원은 2020. 5. 28. “C은 원고에게 14,559,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 2020. 3.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7532호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6.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

- ① 200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 노후된 차량으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
- ② 안성시 D 소재 ‘E’의 임대와 관련한 차임 채권 : 현재 460만 원 정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차후 임차료의 지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
- ③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 : 2020. 6.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외 F 명의로 경료되어 있어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
- ④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2) 소극재산 :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8. 10.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나 C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매수하였으나 다만 등기 명의만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2020. 8.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본소), 2017다264249(반소)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9. 5. 1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36,140,000원 중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4. 19. 계약금 36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5. 10. 수표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000만 원은 G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것으로서 이를 C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희

